

의안번호	2203768
의 퇴 인	박홍배의원
회 답 일	2024. 9. 11.
추 계 번호	24B3628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제4항 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)	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,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함(제4항) 1. 2. (현행과 같음) 3.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4.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5.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6.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7.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	의무규정
2	안 제17조제3항 신설(회의)	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15조제4항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7조제3항 신설(회의)	- 미대상 -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1. 상세사유

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—위원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(안 제15조제4항)

□ 현행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
-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
 - － 현재 국무총리·민간 공동위원장(2명), 정부위원(21명) 및 민간위원(29명) 등 총 52명의 위원으로 구성(2024년 6월 기준)

※ [참고자료]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및 현황 참고

□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시 사용자단체, 노동조합, 농어업인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

-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
-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
-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
-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
-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

□ 이에 따라 사용자 단체, 노동조합, 농어업인 단체 등 개정안에서 규정한 다수의 단체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, 다양한 단체로부터 위원 후보자 추천 절차

1) 법 제15조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)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

2. 기후과학, 온실가스 감축,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, 에너지·자원, 녹색기술·녹색산업,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

를 진행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 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□ 그런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, 전국규모의 노동조합 총연합단체, 농어업인 단체, 자영업자 관련 단체,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를 예상하기 곤란하여, 현시점에서는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한 기간, 인력 등 행정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예를 들어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별 노동조합 등은 6,005개 단체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13,943개 단체 등으로 나타남

[표 1] 총연합단체별 노동조합 수 현황

(단위 : 개, 명)

구분	조합 수	조합원수
한국노총	2,325	1,121,819
민주노총	225	1,099,805
한장노총 ¹⁾	7	11,222
전국노총	19	3,792
대한노총	5	3,264
미가맹	3,424	482,582
전체	6,005	2,722,484

주: 1)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202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, 고용노동부」, 2024. 4.

<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40400372>

[표 2] 노동조합 조직현황 총괄

(단위 : 개, 명)

	조합 수	조합원수
총계	6,005	2,722,484
○ 단위노조		
－ 기업(사업장)	5,255	1,081,190
－ 지역별·업종별노조	523	511,575
－ 산별노조	153	1,129,719
○ 연합단체		
－ 총연합단체	5	—
－ 연합단체	69	—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202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, 고용노동부」, 2024. 4.

<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40400372>

[표 3]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

(단위 : 개)

	중앙행정기관	지방자치단체	합계
비영리민간단체	1,475	12,468	13,943

자료: 행정안전부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, 2024.6.30. 기준
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01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58&nttId=111130

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784개임

[표 4]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 등록 현황

(단위 : 개)

	공익법인(재단)	민간단체	사단법인	재단법인	합계
비영리법인	10	37	694	43	784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, 비영리법인 등 현황, 2024.07.30.
<https://www.mafra.go.kr/home/5001/subview.do?enc=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OCUyRjU3MDk5OCUyRmFydGNsVmllldy5kbyUzRg%3D%3D>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및 현황

(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출자료)

□ 위원회 개요

- (법적근거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‘22.3.25)에 따라 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(이하 위원회) 구성
 - － ※ 기존 ‘2050 탄소중립위원회’(‘21.5.29 출범)는 「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‘21.5.4 시행)에 근거
- (성격) 대통령 직속 민·관 합동 심의기구
- (기능)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·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·평가

<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주요 기능>

-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
-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,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
-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변경 및 점검
-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,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
-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·소통, 국제협력 등

□ 구성 현황

- (위원) 국무총리·민간 공동위원장, 정부위원(21명)* 및 민간위원(29명)
 - － 중앙행정기관장(21명): 기재부, 교육부, 과기부, 외교부, 통일부, 행안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고용부, 여가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방통위, 국조실, 금융위, 산림청, 기상청
- (분과위) 총괄기획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*
 - －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·산업전환, 공정전환·기후적응, 녹색성장·국제협력

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】

